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조치

1. 주요내용

○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(BPOM)에서는 '17. 6. 18. 현지 유통되는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사유로 제품회수 및 수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음

2. 사실 관계 확인사항

❑ 인도네시아에서 돼지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조치 필요사항

○ 식품의약청 규정(Nomor HK.03.1.5.12.11.009955 tahun 2011)에 따르면 돼지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재에 해당 문구와 그림이 포함된 라벨표시 의무화

❑ 돼지의 유전자가 검출된 라면 수입업체 주요의견

○ 식품의약청 수입식품등록(ML) 시 재료 및 첨가물에 돼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돼지성분 라벨을 표시하지 않았음

- 한국식품류 중 돼지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포장재에 해당 라벨을 표시하여 수입함

○ 돼지 DNA가 검출된 라면의 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및 첨가물에 돼지 성분이 없다는 의견임

- 다만, 돼지성분이 포함된 라면의 제조시설에서 해당 라면을 제조함에 따라 돼지 DNA 검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

3. 시사점

❑ 수출식품 라벨표시 준수 및 제조과정에서 철저한 주의요구 필요

- ○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식품에 돼지성분이 포함될 경우 현지 식품의 약청에서 요구하는 라벨을 식품 포장면에 표시
- ○ 돼지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생산된 시설에서 무슬림국가 수출용 식품을 생산할 경우 돼지성분이 검출될 수 있음

❑ 할랄인증 식품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

- ○ 할랄인증 받은 식품이 할랄규정 미준수로 인증취소가 될 경우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○ 할랄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므로, 할랄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인증단계에서 승인받은 시설에서만 할랄식품을 생산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요구됨